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건 축 서 비 스 산 업 진 흥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축기획 업무의 의뢰대상을 확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 등을 통해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내실 있는 공공건축 조성도를 도모하며,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통계작성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며, 일부 자구수정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근거법령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3. 주요내용

가.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주체(의뢰대상) 확대(안 제19조의2제4항)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의 조교수 이상, 같은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으로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주체를 확대

나.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안 제19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자격을 구체화하고, 내부 위원의 상한 비율을 신설하며, 위원장에 대한 선출 기준을 정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

- 다.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 마련(안 제25조제1항)
-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에서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라. 설계의도구현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개정별표)
- 가중처분의 적용 기간 외에 누적회차 적용기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 최소화
- 마. 일부 자구수정(안 제20조제2항 및 제4항, 제21조의2제4항, 제26조제2항)
- 1)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및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총칭하는 공공건축지원센터등으로 일부 자구 수정(제20조제2항 및 제4항)
 - 2)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관할 사업의 사전검토 수행 시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하도록 수정(제21조의2제4항)
 - 3) 제26조제2항제1호 및 동항 제2호가목에서 인용 조문 오탈자 수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우리나라 정부**”를 “**국가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우리나라 정부가**”를 “**국가기관이**”로 한다.

제19조의2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직 중인 건축계획 및 설계분야의 조교수 이상인 자
4. 건축계획 및 설계분야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

제19조의3제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무원**”을 “**해당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한다.

- ①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②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중에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및 조경 분야로 구분하여 구

성하고,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1. 건축설계 분야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도시 및 조경 분야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도시 및 조경 기술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말한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직 중이며 위촉 대상 분야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4. 건축과 관련된 공인된 연구기관 등에 재직 중이며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
5. 해당 공공기관의 직원이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거나 위촉 대상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제20조제2항 중 “**공공건축지원센터**”를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공건축지원센터의**”를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의”로, “**공공건축지원센터에**”를 “해당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로 한다.

제21조의2제4항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를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의 업무를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 기관에 위탁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중 “법 제2조제5호다목”을 “법 제2조제1항제5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법 제2조제5호라목”을 “법 제2조제1항제5호라목”으로 한다.

별표 중 “한다”를 “하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구성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와 해당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기 위촉된 위원의 연임 결정 시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역량 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11조(역량 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 ① ----- ----- ----- ----- -----.
1. 최근 10년간 <u>우리나라</u>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1. ----- <u>국가기관</u> -----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최근 10년간 <u>우리나라</u> 정부가 주최한 대회에서 건축작품으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3. ----- <u>국가기관이</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① ~ ③ (생략)	제19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2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④ ----- -----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
을 말한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

2. (생략)

<신 설>

<신 설>

제19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
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
의위원회(이하 “공공건축심
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
으로 구성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단서 신설>

②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및 조경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 경우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해야 한다. <단서 신설>

_____.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현행과 같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직 중인 건축계획 및
설계분야의 조교수 이상인 자

4. 건축계획 및 설계분야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

제19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

-----.

다만,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중에서 건축계획, 건축
 설계, 도시 및 조경 분야로 구분하
 여 구성하고, -----

 ----.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위
 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0%를

③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④ ~ ⑧ (생략)

초과할 수 없다.

1. 건축설계 분야 10년 이상의 경
험이 있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도시 및 조경 분야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도시 및 조경 기술
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말한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직 중이며 위촉 대상
분야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
으로서 해당 분야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4. 건축과 관련된 공인된 연구기
관 등에 재직 중이며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10년 이
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5. 해당 공공기관의 직원이며 제1
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거나 위
촉 대상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로서 해당 분야 10년 이상의 경
험이 있는 사람

③ -----
해당 공공기관의 직원-----
-----.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은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에 공공건축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③ (생략)

④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검토의견을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건축물등의 착공 전에 그 검토의견의 활용계획을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제21조의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 ③ (생략)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공공건

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이라 한다)
---.

③ (현행과 같음)

④ -----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의 -----

- 해당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 ---
---.

제21조의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

축지원센터에서 법 제24조의
2제2항제1호에 따른 사전검
토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그
내용 및 결과를 공공건축지
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⑤·⑥ (생략)

제25조(업무의 위탁) <신설>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
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법 제37

-----.

⑤·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실
태조사의 업무를 「통계법」 제15
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한다.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 제1항 및 제2
항-----

-----.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반 행위(<u>법 제2조제5호다목</u>에 따른 공공기관이 위반한 경 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과 태료의 부과·징수 2. 시·도지사: 다음 각 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u>법 제2조 제5호라목</u>에 따른 지방 공기업이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 (생략)	-----<u>법 제2</u> <u>조제1항제5호다목</u>----- ----- ----- 2. ----- ----- 가. ----- -----<u>법 제2조제1항</u> <u>제5호라목</u>----- ----- 나. (현행과 같음)
--	---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나.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자의 참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축문화경관과	
연 락 처	(044) 201-3778